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관계 내용이 없는 불필요한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함으로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관계 내용이 없는 불필요한 별지를 삭제(안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 : 901-6728, FAX : 901-6719, E-mail : 201408076@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